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매립지등의 관리·처분에 관한 규정

◇ 제·개정 이유

- 매립지등의 일시사용료·임대료 납부시기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
- 실경작 능력을 갖춘 법인의 참여를 위해 임차자 자격요건을 개선하고, 발작물 재배여건이 양호한 새만금에 맞는 별도의 임대료 산출기준을 규정
- 전대 등 임대차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중대한 계약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보완하고, 임대차 실태조사를 확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
- 간척지 여건 및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인당 최소 임대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,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

◇ 주요내용

가. 매립지등 임차법인의 자격요건 개선(제2조제9호 및 별표2)

- 신규 설립하는 피해농업법인*은 피해농어업인으로만 구성된 경우에 피해농업법인의 지위로서 임대차에 참여 가능토록 피해법인의 정의를 수정
- * (임대대상 자격자: 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제13조제5호)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
- 임대차 참여법인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임대차대상 자격기준 보완

나. 매립지등 사용료 납부시기 조정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가능 대상 확대* (제12조제8항, 제16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)

- * 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1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

정비

- ❶일시사용료·임대료 납부시기는 사업시행자와 임차인이 협의하는 경우 조정 가능토록 변경
- ❷매각대금 분할납부는 매입자가 원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
- * (현행) ❶경작 또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목적시, ❷대상지가 농지이고, 전업 농업인 등인 경우

다. 임차법인당 임대규모 하한 조정(제16조제3항)

- 법인 수요를 고려하여 법인당 임대면적을 최소 20ha 이상에서 5ha 이상으로 완화
- * 간척지별 여건을 반영, 지역의 「매립지등의 관리·처분심의위원회」에서 결정

라. 신문 매각공고 방식을 정보처리장치(온비드) 게재 방식으로 대체 가능토록 개선(제17조제1항)

마. 임대차계약 사후관리 보장 및 위반시 제재기준 보완 (제27조제1항 및 별표4)

- 임대차 실태조사 횟수를 확대(연 1회 이상 → 4회 이상)하고, 부정확한 방법으로 계약, 전대, 경작권 양도 등 위반행위 시 시정 기회 없이 계약해지*
- * (현행) 위반행위 시 정당한 사유 소명, 본인경작으로 시정하면 제재 면피

바. 국유재산 소유권 보존등기시 대장상 기금재산으로 등재토록 행정사항 신설(제33조제5항)

사. 매립지등의 일시사용료 및 임대료 산출기준 보완(별표1)

- 사질성분이 많아 타 간척지에 비해 배수·제염이 원활한 새만금의 토양 특성을 고려, 새만금의 노지작물 임대료율 별도 규정
- * (현행) 수도작 임대료의 10% → (개정안) 식량작물 임대료율에 간척지 환산요율 및 제염·숙전화율을 적용하여 산정